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남궁역,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창진, 박 석,
송재혁, 신복자, 유만희,
윤영희, 이영실, 이원형,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기후예산제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 없이,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 규정(안 제5조제3항).
- 나. 기후예산서 결산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국가재정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효과분석”을 “감축목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대효과”를 “효과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률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기후예산서·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생략)</p> <p>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u>효과분석</u></p> <p>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등 <u>기대효과</u></p> <p>5. (생략)</p> <p><u><신 설></u></p> <p>③ (생략)</p> <p><u><신 설></u></p>	<p>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감축목표</u></p> <p>4. ----- <u>효과분석</u></p> <p>5. (현행과 같음)</p> <p>③ <u>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u>기후예산서·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u></p>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후예산제 관련 현행 조례 세부 사항(기후결산서 관련 내용,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동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